

보수규정

목 차

제1장 총칙

제 1 조(목적)	1
제 2 조(적용범위)	1
제 3 조(용어의 정의)	1

제2장 보수의 산정

제 4 조(임원의 보수)	2
제 5 조(임원에 대한 실비지급)	2
제 6 조(사무총장의 연봉)	2
제 7 조(직원의 보수)	2
제 8 조(초임봉급 확정)	2
제 9 조(연봉의 재확정)	3
제10조(보수의 지급 등)	3
제11조(보수계산)	3
제12조(보수의 감액)	3
제13조(휴직자의 보수)	3
제14조(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)	3
제14조의2(징계기간의 보수지급)	3

제3장 수당

제15조(수당 등의 지급)	4
제16조(파견직원 수당)	4
제17조(복리후생비)	4

제4장 퇴직금

제18조(퇴직연금)	4
------------	---

제18조의2(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)	5
제19조(근속년수의 계산)	5
제20조(지급일)	5
제21조	삭제
제22조	삭제
제23조	삭제
제24조	삭제
제25조	삭제
제26조	삭제

제5장 복지후생

제27조(수혜대상)	5
제28조(복지후생비)	5
제29조(보건관리)	5
제30조(직무상 질병치료의 보조)	6
부칙	6
별표	

1. 위원장 직무수행경비	8
2. 사무총장 연봉	8
3. 직원 연봉 기준표	8
4. 경력 환산율표	9
4-1. 연봉 책정 기준표	9
4-2. 경력 가산 기준표	10
5. 파견직원 수당 월 기준표	10

보수규정

제	정	2007. 7. 2.	
개	정	2008. 1. 7.	
개	정	2008. 12. 24.	
개	정	2009. 12. 29.	
개	정	2010. 12. 28.	
개	정	2012. 1. 10.	
개	정	2013. 4. 9.	
개	정	2014. 1. 20.	
개	정	2016. 3. 21.	
개	정	2016. 12. 21.	
개	정	2018. 2. 21.	
승	인	2018. 2. 28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792호
개	정	2018. 12. 19.	
승	인	2019. 1. 11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129호
개	정	2019. 12. 9.	
승	인	2020. 1. 1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4254호
개	정	2020. 12. 18.	
승	인	2020. 12. 29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6469호
개	정	2021. 12. 28.	
승	인	2022. 1. 3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30호
개	정	2022. 7. 21.	
승	인	2022. 7. 27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2207호
개	정	2022. 12. 22.	
승	인	2023. 1. 18.	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-170호
개	정	2023. 12. 15.	
승	인	2024. 1. 5.	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-117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도평방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임·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12.24., 2016.3.21.>

제2조(적용범위) ① 위원회 임·직원 보수는 법령이나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16.3.21.>

② 계약직원 및 임시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보수”라 함은 기본연봉, 성과연봉,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2.1.10.>
2. “연봉”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.
3. “연봉월액”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4. “보수의 일할계산”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직무수행경비”라 함은 임원에게 위원회의 업무를 위한 대외 활동비로 매월 지급하는 정액을 말한다. <개정 2014.1.20., 2016.3.21., 2018.2.28.>
6. “기타수당”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. <개정 2012.1.10.>
7. 성과연봉은 근무실적 평가, 직무수행능력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14.1.20., 2016.12.21.>

제2장 보수의 산정

제4조(임원의 보수) ①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감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위원장에게 별표 1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한다. <개정 2008.1.7., 2016.12.21., 2018.2.28>

제5조(임원에 대한 실비지급) ①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감사가 위원회 업무상 여행을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. <개정 2016.3.21.>

② 위원장은 부위원장, 위원 및 감사가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며,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비상임 임원이 위원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. <개정 2016.3.21., 2018.2.28>

제6조(사무총장의 연봉) ① 사무총장의 연봉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6.12.21.>

1. 삭제 <2009.12.29.>

2. 연봉의 계산기간은 법인의 회계연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사무총장의 연봉은 12등분하여 매월 직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 다만, 보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보수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.

③ 회계연도 중에 취임 또는 퇴임하는 경우 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④ 사무총장이 휴직하는 그 기간 동안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상 질병,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직원의 보수) ①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. <개정 2012.1.10., 2016.12.21.>

② 임용권자는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, 직무수행능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봉계약을 직원과 개별적으로 체결한다. <개정 2012.1.10., 2016.12.21.>

③ 차기년도 연봉조정은 일괄적으로 매년 12월에 실시한다. <개정 2012.1.10.>

제8조(초임연봉 획정) ① 사무총장과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은 별표 2와 별표 3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. 다만, 연봉 하한액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연봉 하한액의 130% 이내에서 인사위원회가 결정하되 직급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16.12.21.>

② 신규 채용자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정하고, 1년 미만의 기간 또는 매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버린 후

일할 계산하여 가산하고, 별표 4-1의 연봉책정 기준표에 따른다. <신설 2016.12.21.>

③ 군복무 경력이 있는 자는 3년을 한도로 매 1년에 별표 4-2에서 정하는 채용직급의 경력가산 기준액을 가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 또는 매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버린 후 일할 계산하여 가산한다. 다만, 3년을 초과하는 군복무 경력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다. <신설 2016.12.21.> <개정 2012.1.10., 2016.12.21.>

제9조(연봉의 재확정) ① 승진, 휴직, 징계 등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연봉조정을 실시한다. <개정 2012.1.10.>

② 승진 시 6급에서 5급은 기본연봉의 15% 인상률을 5급에서 1급까지는 각 직급 기본연봉의 10% 인상률을 반영하되 별표 3 직원 연봉기준표의 하한액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.10.>

제10조(보수의 지급 등)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1조(보수계산) ①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. 다만,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.

②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(단,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 제외) 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(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)의 보수는 해당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20.12.29.>

③ 보수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.

④ 삭제 <2014.1.20.>

제12조(보수의 감액) 규정에 의한 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를 제외하고 결근한 직원에게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6.12.21.>

제13조(휴직자의 보수)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을 한 직원에게는 휴직기간동안 월보수액의 5할을 지급한다.

② 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을 한 직원에게는 휴직기간동안 월보수액 전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16.3.21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) ①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10을 감하고 지급한다. 다만, 징계의결의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30을 감하고 지급한다. <개정 2018.2.28.>

② 제1호의 기간 중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, 연차수당은 예외로 한다. 다만,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할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<신설 2018.2.28.>

제14조의2(징계기간의 보수지급) ① 징계 처분된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. <신설 2018.2.28.> <개정 2022.7.27.>

1. 강등시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는 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2.7.27.>

2. 정직처분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2.7.27.>

3. 감봉처분 기간 중 보수는 1개월(회)당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고, 감봉기간이 2개월(회) 이상일 경우에는 총 감봉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.

②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. <신설

2022.7.27.>

1.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(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)을 받은 자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(금품수수, 향응수수, 횡령)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
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추행, 간음 등)에 따른 성폭력범죄
4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매매
5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(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)
6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)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

제3장 수 당

제15조(수당 등의 지급) ①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20., 2016.12.21.>

1. 시간외근무수당 : 직원이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자에 대한 수당
2. 휴일근무수당 : 명령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한 수당
3. 가족수당 :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한 수당 <개정 2014.1.20.>
4. 직책수당 : 과장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대한 수당 <개정 2009.12.29., 2014.1.20., 2016.12.21.>
5. 대우수당 : 상위직급대우로 발령된 직원에게 대한 봉급 6%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

②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월차 휴가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교통비, 급식비, 직급보조비, 장기근속수당, 성과급, 관리업무수당, 등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2.29., 2010.12.28., 2014.1.20., 2016.12.21.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(파견직원 수당)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타 기관의 직원에게 파견수당과 근무처가 서울특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파견된 직원에게는 매월 주거지원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21.>

② 제1항의 수당 및 주거지원비는 별표 5와 같다.

③ 경기대회 도평관리 지원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주최·주관기구와의 업무협약 또는 문서로 명시되지 아니한 각종 수당 등을 수령할 수 없다.<신설 2018.2.28.>

제17조(복리후생비)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건강진단 및 의료보험
2. 고용보험,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4장 퇴직금

제18조(퇴직연금) ① 사무총장과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. <신설 2016.12.21.>

② 퇴직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(DB)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(DC)으로 지급하며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6.12.21.>

1.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하고,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분의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월수(3개월)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2.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지급금액은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.
3.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납입기준 금액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의 연간급여액의 12분의 1로 한다.

③ 휴직, 병가, 연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감액된 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. <신설 2018.2.28.>

④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. <신설 2016.12.21.> <개정 2016.12.21.>

제18조의2(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)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/2를 줄여 지급한다. <신설 2022.7.27.>

1. 재직 중의 사유(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)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

2.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해임된 경우

②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/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퇴직금 감액 및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 또는 지급 정지된 금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제19조(근속년수의 계산) ①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로 계산하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신설 2016.12.21.>

1. 1년 미만 근속기간 : 근속일수/365

2. 재직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.

②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. 다만,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하고,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6.12.21.> <개정 2016.12.21.>

제20조(지급일)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. <개정 2016.12.21.>

제21조 삭제 <2016.12.21.>

제22조 삭제 <2016.12.21.>

제23조 삭제 <2016.12.21.>

제24조 삭제 <2016.12.21.>

제25조 삭제 <2016.12.21.>

제26조 삭제 <2016.12.21.>

제5장 복지후생

제27조(수혜대상) 복지후생의 수혜대상은 직원으로 한다.

제28조(복지후생비) ①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설치운영과 각종 보조비 및 다음 각 호의 복지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20.>

② 복지후생비에 대한 필요한 세부시행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.20.>

제29조(보건관리) ① 임직원의 보건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1.>

② 보건관리에 관한 필요한 세부시행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0조(직무상 질병치료의 보조) 직원이 위원회 업무수행 중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21.>

부 칙 <2007.6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관 효력발생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8.1.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8.12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9.12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0.1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1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4.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1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3.21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12.21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2.28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1.11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1.1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12.29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1.3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7.27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1.18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1.5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08.1.7., 2014.3.5., 2018.2.28.>

위원장 직무수행경비

구 분	직무수행경비
위원장	월 2.5백만원

[별표 2] <개정 2008.1.7., 2012.1.10., 2016.12.21., 2018.2.28., 2019.1.11., 2020.1.1., 2020.12.29., 2022.1.3., 2023.1.18., 2024.1.5.>

사무총장 연봉

(단위: 천원)

직 명	연간 지급액	
	하한액	107,123
사무총장	상한액	120,513

[별표 3] <개정 2008.1.7., 2009.12.29., 2010.12.28., 2012.1.10., 2013.4.9., 2016.12.21., 2018.2.28., 2019.1.11., 2020.1.1., 2020.12.29., 2022.1.3., 2023.1.18., 2024.1.5.>

직원 연봉 기준표

(단위: 천원)

구분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
하한액	76,113	67,258	59,356	47,948	41,264	33,327
상한액	105,036	92,815	81,949	66,266	57,139	46,148

[별표 4] <개정 2016.12.21., 2018.2.28.>

경력 환산율표

구 분	경력내용
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직원 경력 -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경력(의무복무) -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-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근무 경력 - 체육관련 가맹단체 등 근무 경력 -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
7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장기업 근무 경력 -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
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타 군 복무기간 - <삭제> - <삭제> - <삭제> - 일반 기업체 근무 경력 -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

[별표 4-1] <신설 2016.12.21.>

연봉 책정 기준표

경력연수 연봉	1년 미만	1년 이상
금 액	하한액	하한액+[기준액×(경력연수-3)]

※ “기준액” 이라 함은 별표 4-2의 경력가산 기준표의 금액을 말한다.

[별표 4-2] <신설 2016.12.21.>

경력 가산 기준표

(단위: 원)

구 분	기준액
사무총장	840,000
1급	780,000
2급	720,000
3급	660,000
4급	600,000
5급	540,000
6급	480,000

[별표 5]

파견직원 수당 월 기준표

(단위: 천원)

공무원 위원회	4급	5급	6급	7급	8급 이하
	1급	2급	3급	4급	5급 이하
파견수당	600	500	400	300	200
주거지원비	500				